2021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전담직원 채용(3차) 공고문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전담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

○ 공통 지원자격

- 응시연령: 만 18세 이상

- 학력: 제한 없음

※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」제10조(임용 결격사유)에 해당되거나,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○ 우대조건

직렬	사업명	채용 인원	우대조건	
사업 전담	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	1	우대조건	· 국가유공자(취업우선지원대상자) · 창업 보육(실험실 창업) 업무 지원 경력자 ·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및 기술창업지도사 등 창업 보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· 연구비 관리 경력자
			담당업무	· 실험실 특회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수행 및 관리(전담인력)

2. 응시워서접수

- **접수기간**: 공고일 ~ 2021. 8. 8.(일)
- **접수방법**: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으로만 접수)
 - URL: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(http://snurnd.snu.ac.kr) → 산학협력단 소개 → 채용 → 채용공고(사업전담) → 지원서 작성
 - ☞ 유의사항
 - ① 우편, E-mail 접수 불가
 - ②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
 - ③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
 - ④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·확인 요망

3. 선발절차(서류전형 → 면접전형)

- **서류전형**: 홈페이지 온라인 입사지원
 - ※ 평정요소: 발전가능성 및 소양, 전문성, 자기계발, 입사지원서 작성 충실도, 논리성, 상대적 우수성 등

- ※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내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합격자 결정
- 〇 면접전형: 개인별 질의면접(1대多 면접)
 - ※ 평정요소: 일반소양 및 가치관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발전가능성 등

4. 채용일정

- 채용공고: 공고일 ~ 2021. 8. 8.(일)
-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: 2021. 8. 12.(목) 예정
- **면접시험**: 2021. 8. 17.(화) 예정
- **최종 합격자 발표**: 2021. 8. 19.(목) 예정
- **임용예정일**: 2021. 8. 25.(수) 예정
 - ※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게시판(공지사항-채용)에 별도 공지 예정

5. 임용사항 등

- 계약기가: 2021. 8. 25. ~ 2022. 1. 31.
 - ※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1단계 사업기간에 한정(단, 사업기간 연장 시 추가 1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)
- **보수**: 세전 월 290만원 수준(4대보험 가입)
- 임용 제외

◆ 「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」제10조 【임용 결격사유】
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7.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8.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
- 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- 10.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
- 11.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

◆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【결격사유】 준용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한다)
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. 기타사항

- 서류전형합격자 등 시험 공지사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 안내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-채용)에 공지
-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,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,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·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 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
-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
- 최종합격자는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(상근)가 가능하여야 함
-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채용부서(총무기획부 ☎02-880-2076) 또는 사업부서(전략사업부 ☎02-880-7892, 2028)로 문의

2021. 8.

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